

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바. 의견진술서 제출처

- 주소: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(마곡동)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
- 전화번호: 02-2657-7922, 팩스번호: 02-2657-7950
- 전자우편: skyblue7@seoul.go.kr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-46호

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

강서 농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업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5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허가취소 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8년 1월 11일
서울특별시

1. 처분대상

연번	상 호	허가번호	소 재 지	대표자
1	㈜강서해인청과	2강10236	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로 40(외발산동)	박*태

2. 처분의 내용 : 중도매업 허가취소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 - 3개월 연속 무실적(2017. 8~10월)
4. 처분근거 :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5조
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[별표 4]
5. 처 분 일 : 2017. 12. 28.
6. 이의제기 안내
 - 동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,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,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(행정심판법 제27조)을, 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,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(행정소송법 제20조)을 제기할 수 있음.
7.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절차 안내
 -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내 배정받은 점포 반납, 보증금 환급 등의 절차를 거쳐 중도매업 허가취소 처리됨.
 - (허가취소 절차관련 문의 :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유통관리팀 ☎2640-6056)
8. 기타 문의처 :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(☎2133-5384)